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28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고B

변론 종결2023. 6. 14.

판결 선고2023. 8.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9.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D,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인 C에 대하여 E의 상속개시는 물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41,161,661원 및 그 중 1,446,290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3,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1,595,000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980,500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확정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32969, 2020. 6. 24. 송달, 2020. 7. 9. 확정)을 보유한 C의 채권자인 사실, E는 2022. 3.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C, 피고를 포함한 직계비속 9인 중 2022. 6. 28.자 상속포기신고를 한 직계비속 2인을 제외한 직계비속 7인이 있었던 사실(즉 C의 상속지분 1/7), 위 E의 상속인 전원은 2022. 9. 22.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2. 9. 28. 접수 제17875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재산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1)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중 아래와 같은 권리들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지급명령상의 채권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은 각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순번 1 원금 1,446,290원, 순번 2 원금 3,000,000원, 순번 3 원금 1,595,000원)1) .

1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	A	2003.4.15.	A	2019.2.22.	2020.8.7.
2	H 주식회사 I 유한회사	A	2003.7.31.	A	2019.2.22.	2020.8.7.
3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	2003.3.27.	A	2019.2.22.	2020.8.7.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점으로서 위 각 채권의 성립일 이후인 위 각 최초채권양도양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순번 1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점이 도래하기 전인 2002. 9. 27. 지급명령이 신청되어 2002. 10. 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02차7677),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6. 18. 재차 지급명령이 신청되어 2012. 7. 6. 확정되었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29701),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앞서 가.항에서 본 지급명령의 신청 및 확정이 있었고, ② 순번 2, 3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0. 6. 4. 지급명령이 신청되어 2010. 7. 2.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40832),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앞서 가.항에서 본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되고, 위와 같은 지급명령의 각 신청은 재판상 청구로서 민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그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그 확정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각 제기된 지급명령신청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이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각뿐만 아니라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같은 실질을 가지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협의분할 중 C의 상속지분 1/7에 관하여서는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C에 대한 대여금 7,200,000원과 상계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C에게 1년 내에 상환받기로 하여 2020. 2. 14. 6,000,000원, 2020. 2. 18. 1,200,000원 총 7,2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C가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위 상속지분과 대여원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자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먼저 피고와 C의 인적 관계, C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로부터 일방적인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원물반환)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및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물변제의 가액은 2,329,743원에 불과한바 이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7,200,000원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그와 같은 채권을 보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C의 인적 관계가 긴밀한 점, 대물변제 금액이 이로써 소멸하는 채권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물변제를 수령하는 채권자가 선의의 채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판사이디모데

별지

1)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위 채권들 외에 다른 채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나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채권들에 대하여서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한다.

2)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법원 2022가단12627)을 같은 날 선고하였다(현시점에서는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 이에 따른 재산의 회복을 마친 상황이 아니어서 어느 사건도 권리보호의 이익 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